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 415 조의 2, 제 542 조의 11 및 에어부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정관 제 39 조, 제 51 조 내지 제 53 조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제 3 조(직무와 권한)

- 1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회사간 소송 및 상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회 대표자 선출권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권
10.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11.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12.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경영상 중요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의무)

- 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 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기타 상법 등 관련법률상 인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책임)

- 1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전 2 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 항의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참가한 감사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6 조 (구성)

-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3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4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7 조(위원장)

- 1 위원회는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회의)

-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2 정기위원회는 년 1 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소집권자)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소집절차)

-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1 조(결의방법)

-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2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12.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6.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제 13 조(의사록)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3 의사록의 사본을 7 일 내에 각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관계인의 출석 등)

-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 1 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1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 1 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내부회계관리제도)

-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보고서 일자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기타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다. 권고사항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내역

마. 자금관련 부정 위험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내역

제 4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17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20 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21 조(간사)

- 1 위원회에는 간사 1 인을 둔다.
- 2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22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조항 신설) 신설된 조항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조항 변경) 변경된 조항은 2025 년 11 월 12 일부터 적용한다